■ [별지 제7호서식]

유급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

※ 본인은 (사업장명)의 경영난으로 인한 (년 월)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,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.

성 명		근무 부서 (실근무장소)	( )
주민등록번호		근로계약기간	. . . ~ . . .
연 락 처		소정근로시간 (근무시간대)	1일 시간 (시 분~ 시 분)

고용유지조치계획

○ (년 월) 고용유지조치계획

1) . . . ~ . . . 기간내 고용유지조치 예정임을 확인합니다.

일자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
단축시간	00:00 ~ 00:00															
일자	17	18	19	20	21	22	23	24	25	26	27	28	29	30	31	
단축시간																

2) 상기 고용유지조치 기간에는 일체의 근로 제공이 없어야 합니다.

3) 개인사정(질병, 사고, 가사사정 등) 및 산재로 인한 휴업·휴직이 아님을 확인하며,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아닌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을 시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할 것임을 확인합니다.

지급금품

○ (년 월)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금품으로 (금액, 산출기준(평균임금 70% 등))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* 임금 보전 금품 산출내역

협의

○ 고용유지조치계획과 지급금품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부정수급 처분

○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할 계획이며,
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도록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해당자도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(부정수급 적발될 경우,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장려금 부지급(기 지급분 반환), 추가징수(최대 5배), 부정수급액 기준 1년 범위 내 장려금 지급 제한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)

❖ 해당 고용유지조치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, 처분 등을 위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이외 사용 불가)

위 내용에 동의하며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확인자(근로자) (서명 또는 인)

「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로부터 확인받았으며, 동 확인서를 고용유지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사업주) (서명 또는 인)

경기지방고용노동청(고양지청)장 귀하